

독일의 반론권(하)

박 운 희
이화여대 강사

지난호 「독일의 반론권」 상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하편을 게재한다. 이번호에 게재되는 부분은 목차란 중 고딕체 활자 부분이다.

..... 편집자 주

III.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1. 개설

독일의 방송체계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체제이다. 1986 년부터 민영방송이 본격적으로 허가되기 시작하였지만 1), 민영방송은 소규모의 라디오방송과 CATV 정도에 그칠 뿐 2), 아직도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영방송에는 지역공영방송들이 연합하여 만든 전국적 채널의 ARD, 독립된 제 2 의 전국공영방송인 ZDF, 그리고 11 개 지역의 각 지역 공영방송 등이 있는데 비하여, 민영 텔레비전방송은 RTL Plus, Tele 5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적 책임(öffentliche Aufgabe)」이란 개념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제 1 차 텔레비전 판결(Fernsehen Urteil) 4)에서 었을만큼, 방송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인쇄매체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5).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판결에서 「방송은 기본법 제 5 조상의 단순한 여론형성의 매체가 아니라 여론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일에서의) 방송운영은 전통적으로 공행정에 속하였는바,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따라 공적 책임의 개입을 국가성의 영역에 접근시키고 방송 역시 출판과 같이 공적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방송독점권을 가진 공법상의 특수법인인 방송공사의 내부적 조직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6)고 판시함으로써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7)

이렇게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은 그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방송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해외방송, 즉 독일방송(Deutschlandfunk, DLF)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 8)를 제외하고는 각 주에 위임하고 있는 까닭에 (기본법 제 30 조와 제 70 조 제 1 항),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에 관한 법규정은 그 수와 내용에 관한 한 일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1948 년에 바이에른주 방송법과 헤센주 방송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각 주는 독립적인 방송법이나 언론법, 또는 매체법에서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에 따라서는 주의 출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인쇄매체와는 그 주체를 달리하는 주도 있어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은 실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9). 한편, 방송의 기술적 특성상 주와 주사이의 규제가 필요한 바, 1951 년에 라인란트-팔츠주와 바덴주가 남서부방송협정(Südwestfunk-Staatsvertrag)을 맺은데 이어, 1961 년에는 모든 주가

참여하여 「공영방송 제 2 독일텔레비전 설립에 관한 주간 협정(Staatsvertrag über die Erreichung der Anstalt der öffentlichen Rechts Zweites Deutsches Fernsehen, ZDF) 10)을, 1980년에는 함부르크와 니더작센주 및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가

「북부독일방송(Norddeutschen Rundfunk, NDR)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밖에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과 민영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이 또 서로 달라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나, 이하에서는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규정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반론방법과 적용법규 등 특징적인 점들을 살펴본다.

2. 공영방송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방송에 모두 적용되는 바, 반론권의 주체와 유발방송과의 관련성문제, 유발방송의 사실성문제, 청구방법 등은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반론방법, 기간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밖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바, 먼저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을 개관하여 본다.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①유발방송의 사실주장에 국한되고, ② 반론요청은 방송책임자에게 자필로써 서명 11)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③ 반론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④본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반론은 유발방송 후 즉시 요구되어야 하며, 반론방송은 지체없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침묵없이 방송되어야 한다.

(1) 주체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규정 제 4 조에 의해 ARD가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인

「독일 TV(Deutsches Fernseh)」를 방영하는 방송사들에 있어서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유발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관청이다.12)

그러나 동원칙과 상관없이 ARD의 개별방송들에 대해서는 ARD 규정과 반론권의 주체와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2) 반론의무자

공영방송에서 반론방송을 방영하여야 할 의무자는 총감독(Intendant)13), 방송사(Rundfunkanstalt)14), 책임있는 편집자 및 출판인에 대응되는 자 15), 설립경영자(Veranstalter)16) 등이다 17). 출판법에서의 반론권조항을 방송에 유추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놓은 주법 18)에서는 그밖에도 책임있는 기획자(Verantwortlicher Sendeleiter bzw. Moderator)도 반론의무자로 정하고있는 바, 이는 Löffler가 주장한 이래 통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19)

그러나 Bethge는 책임있는 기획자를 반론의무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 반론권의 의무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반론을 요청받는 사람(수취인, Adressat)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반론방송을 하는 자는 방송사이므로 반론의 의무자는 결국 방송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 함부르크 고등법원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판결이 Bethge의 의견에 동조한 이내 21), 현재는 방송사만을 반론의무자로 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1980 년대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서부독일방송법(§9 ①), 쾰른-르란트방송법(§7 ①), 북부독일방송법(§12 ①), 남서부방송법(§7 ①), 자유베를린방송, RIAS 방송법 등에서는 반론의무자를 단지 방송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기간

유발방송에 관련된 반론권자는 반론청구기간 내에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바, 각 주마다 이 청구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바이에른주의 방송법은 청구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영방송 제 2 독일텔레비전설립에 관한 주간협정과 DW 법, DLF 법, 니더작센주의 방송법, 쾰른-르란트주의 방송법, 라이란트-팔츠주의 방송법, 함부르크의 매체법 등은 단지 「유발방송 후 <즉시>」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방송법과 헤센주의 방송법 등은 「유발방송 후 6 주」, 노르트라인-데스트팔렌주의 방송법과 브레멘의 매체법, WDR 에 관한 주간협정은 각각 「유발방송 후 2 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이 각주의 관련법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법정 시비가 그치지 아니하였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즉시」, 「지체없이」의 기간은 유발방송을 「안 때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반론을 청구하여 야 한다는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주간협정(NDR-Staatsrertray)의 규정은 그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효력이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 렸다 22).

연방헌법재판소의 동판결 이후에는 반론권의 청구기간에 관한 해석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즉시」, 「지체없이」의 기간은 결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나, 적어도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2 주일 내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간계산은 인쇄매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일반원칙(alsqj 제 121 조)에 따른다.

(4) 반론방송

반론요청방법과 사실주장에 대한 사실반론만이 가능한 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반론만이 인정되는 점, 기타 법원에의 제소방법 등은 인쇄매체에 있어서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반론방송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론방송은 기본적으로 유발방송이 나간 즉시, 지체없이(unverzüglich, ohne schuldhaftes Verzögern), 유발방송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방송영역(gleiche Sendebereich)에서 방송되어야 한다.

1) 즉시성(Unverzüglichkeit)

「유발방송이 나간 즉시」란 유발방송이 나간 뒤에 반론이 청구된 경우, 유발방송과 동일한 차후방송(nächstfolgenden Sendung)에서 즉각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3).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론요청 후 늦어도 3 일 안에, 주단위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프로그램에서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규방송이 아닌 특집방송이었을 경우에는 유발방송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방송시간대에 그 다음날로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인쇄매체에 있어서 「인쇄되지 아니한 다음호」에 반론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응되는 해석방법이다.²⁴⁾

즉시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반론이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청자의 뇌리에서 유발방송의 내용이 사라져 반론의 효과가 그만큼 감소된다는 점과 반격이 바로 되지 아닐 경우 무기대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이다²⁵⁾.

2) 동일방송시간

반론방송은 유발방송이 나간 시간대와 같은 시간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야 한다²⁶⁾. 이는 인쇄매체에서 「동일한 인쇄지면에 반론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란 반론방송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로고(Logos; 주제음악이나 음성, 또는 자막)가 나간 뒤, 또는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로고가 나가기 전에 반론방송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⁷⁾. 결국 유발프로그램과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반론방송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3) 동일방송영역

반론방송은 유발방송이 나간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방송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방송의 특성상 방송이 나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발방송이 나간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반론이 방송되는 것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다²⁹⁾. 즉, 독일에서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주 단위의 방송이고, 주간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방송이라 할지라도 국지성을 면치 못하는데다가, 연방단위의 중앙방송사(독일방송, DW 등)가 방송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지역에만 방송되는 것이 많으므로, 반론방송도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반론방송의 공간적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에도 적용되는 바, 예컨대, 유발방송이 정규방송이 아니라 특집방송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특집방송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었을 경우에는 반론방송도 정치적인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이었을 경우에는 반론방송도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³¹⁾

4) 반론방송의 방법

반론방송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형식에 관계없이 아나운서가 담담한 어조(neutraler Sprechweise)로 반론문을 낭독하는 고지방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이를 반론권자를 인터뷰하거나 그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방영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³²⁾. 이는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문을 담자 편지형식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방법들은 반론권을 형해화하는 동시에, 제시된 대체방법들은 대부분 개인의 자기선전을 담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도 어긋나는 까닭에 허용되지 아니한다³³⁾.

그러나 주면이 있는 TV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대응필름(Gegenfilm)³⁴⁾이 인정되기도 하는바, 대응필름이 나가는 동안 반론문의 낭독이 병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운서의 반론문의 낭독없이 음향과 자막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³⁵⁾.

대응필름이 없이 아나운서의 고지방송만 낭독될 경우 화면은 반론방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되는 것이 보통이나, 반론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주면이 선택되어 질 수도 있고, 몇 장의 연속주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들 화면에 대한 설명이 첨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관한 결정은 반론권자와 의무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가리켜 협력의무(Mitwirkungspflicht)라 한다³⁶⁾. 이러한 협력의무는 보통 반론권자가 제공한 사진을 방송사에서 거절하거나, 사진을 영상화하는 기술적인 과정³⁷⁾에서 방송사가 협력을 거부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한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을 경우, 방송사는 협조하지 아니한, 또는 협력할 수 없었던 상황과 이유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³⁸⁾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어느 한 사항에 한 불허가 전체반론의 불허로 연결될 수 있는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론방송 시간은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유발방송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론시간이 주어지는 바, 단지 유발방송보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적용법규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적용법규는 기본적으로 유발방송을 방송한 방송사의 주소지 및 전파지의 주법이다³⁹⁾. 이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법률관계는 그 방송사 도유의 주방송법 내지 특정의 주간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⁴⁰⁾ 즉, 문제된 방송을 내 보낼 방송사는 유발방송을 어디서 수신하였느냐에 상관없이 그 방송사에 도유한 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권에 적용되는 법규는 유발방송사가 존재하는 주의 방송법이며, 안테나, 중계탑 같은 기술적인 설비의 주소지나 반론권자의 주소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한편, ARD의 경우에는 유발방송을 만든 제작사에 고유한 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의 주법이 적용된다(ARD-Grundsätze für die Zusammenarbeit, Ziff. 2). 그것은 ARD 자체가 독일의 연합방송으로서 각 독립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기타 법적 절차⁴²⁾와 반론강제, 그에 따른 제재방법 등은 전술한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규정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3. 민영방송

제 1 차 텔레비전 판결⁴³⁾에서 공영방송의 독점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이래, 독일에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민영방송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확인만 계속되었을 뿐⁴⁴⁾, 설립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⁴⁵⁾.

현재 민영방송은 라디오와 CATV(독일어로는 Kabel-System 이나 본 연구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CATV 라 한다). 주상전송제도(Bildschirmtext System)에 그치고 민영 텔레비전 방송은 없는 상태이다.

중요한 민영방송법으로는 1980 년에 제정된 라인란트-팔츠주 유선방송시험법(Landesgesetz über einen Versuch mit Breitbandkabel)과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상전송시험법(Bildschirm-textversuchsgesetz), 1984 년에 제정된 바이에른주의 매체시험법(Medienerprobungsgesetz), 베를린의 유선조정계획법(Kabelpilotprojektgesetz), 1985 년의 함부르크와 바린-뷔르템베르크주의 매체법(Mediengesetz), 1988 년의 헤센주의 민영방송법(Gesetzüber den privaten Rundfunk)과 1989 년의 브레멘의 매체법(Landesmediengesetz) 등이 있다.

민영방송에 관한 주간협정도 체결되어, 1983 년에 베를린을 포함한 13 개 주가 「화상전송에 관한 주간협정(Staatsvertrag über Bildschirmtext)을 맺었는 바, 이들 법에는 모두 반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론권의 주체, 의무자, 기간, 청구방법 등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CATV 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방영특성 때문에, 그리고 화상전송제도는 전자매체의 특성상 그에 따른 반론방송의 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CATV 와 화상전송제도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① 유발보도와 같은 외양(Ausmachung)으로 46), ② 유발보도가 행하여진 회수만큼 되풀이하여, ③ 유발보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행하여져야 하며, ④ 유발보도가 더 이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곧바로 중지된 때에는 반론권자는 자신의 반론을 본래 예정 하였던 특정 시간에 보내줄 것을 최대 한달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러한 반론권은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방송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47)

IV. 맺는말

일반적 인격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반론권은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모델로 도입 소개되면서 「프랑스의 반론권보다 훨씬 합리적이고도 세련된 구체절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반론권은 각주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일률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며, 프랑스의 것보다 반론권의 주체, 기체, 의무자, 대상, 제한 등에 있어서 훨씬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반론권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반론권은 「사실주장에 대한 사실반론」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견과 가치판단, 학술적 비평 등에 대하여는 반론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독일이 반론권의 기능으로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여론형성에의 기여」라는 점에서 분완전하다.

2. 언론보도에 관련된 자 가운데 법인격 없는 사원은 그 구성원만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자의 반론권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프랑스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3. 반론문의 길이에 대하여는 유발기사의 양을 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정하여 놓은 프랑스의 경우보다 외형상으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반론문이 단 몇 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4.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선거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구제」를 생명으로 하는 반론권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5. 더구나 외국인에게 반론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기간과 절차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외국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6. 반론권의 청구방법에 있어서는 반론권자의 주필서명, 문서화 등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다.

7. 각주마다 다른 반론권규정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반론권에 관한 규정도 출판법, 언론법, 방송법, 매체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주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배포·방송되는 언론의 특성상 적용법규의 난점이 상존하는 등 제반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반론권의 행사가 실제로 어렵다.⁴⁹⁾

주

1) Christopher Witteman, "West German Television Law : An Argument for Media as Instrument of Self-Government" (이하 "West German II"이라 함) , 11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 REV 154(1987) .

2) Marcellus Snow,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Policy In West Germany"(이하 "Telecommunications"라 함) , 32 Journal of Communications 9(1982); Petter J. Tettinger, "New Mass Media and German Constitutional Law"(이하 "New Mass Media"라 함), 5 Public Law Forum 125(1986) ; Wolfgang Hoffmann-Riem, "Massenmedien"(이하 "Massenmedien"이 "Probleme"라 함), 3 Film und Recht 101(1972). (1972).

4) BVerfGE12, 205.

5) Arthur Williams, Broadcasting and Democracy in West Germany (이하 Broadcasting 이라 함),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77, 263 쪽 : Helmut Steinberger, "Freedom of the Press and of Broadcasting and Prior Restraints"(이하 "Freedom of the Press"라 함), in Rudolf Bernhardt et al., Völkerrecht für Hermann Mosler, Springer Verlag, Berlin, 1983, 917 쪽.

6) BVerfGE 12, 205(246-263).

7) Micael Zoeller, "Public Control – Clause or Consequence of Scarcity? The Example of Regulating Electronic Media In the U.S.A. and in Germany"(이하 "Public Control"이라 함). In Kurt R. Leube, Albert H. Zlabing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Freedom Philosophia Verlag, München, 1984, 143 쪽 ; Walter Schmidt-Glaeser,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verf"(이하 "Die Meinungsfreiheit"라 함) , AöR 72, 97.

8) DLF 와 DW 는 1960 년, 연방정부에 의하여 연방방송국으로 설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Löffler/ Wenzel/Sedelmeier, Kommentar, 593 쪽 참조.

- 9) 예를 들어 헤센주의 방송법 제 3 조 제 8 항과 제 9 항, 그리고 남서부독일방송을 위한 주간협정은 반론권을 공적 행정이나 공적 생활에 관하여 공격을 받은 자, 또는 진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방송보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어, 반론권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동주의 출판법이나 독일의 여지 주의 반론권 규정과는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부독일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규약(Richtlinien über die Gegendarstellung im Hörfunk und Fernsehen des Süddeutschen Rundfunks; SDR -RiLi)에서 '정부 또는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비판받은 개인과 관청 및 기관에 대하여 유발고송과 동등한 방송시간과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침해에 관하여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을 뿐, 반론권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동등시간규정에 불과한 반론권을 갖고있을 뿐이다
- 10) 방송에서의 반론권 규정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는 '공영방송 제 2 독일텔레비전 설립에 관한 주간협정'의 반론권 규정(§4)을 보면, "사실주장이 방송되었을 경우, 이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는 반론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론방송은 즉시 유발방송과 동일한 지역, 동일한 시간대에 침묵없이 방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11) 서명에 대한 근거있는 의심이 갈 경우 방송사는 본인에게 서명에 대한 인증(Beglaubigung)을 요구할 수 있다(ZDF 협정 제 4 조 제 1 항).
- 12) 바이에른방송은 직접 관련된(unmittelbar betroffen) 개인이나 관청(Behörde): 헤센방송은 관계(beteiligte)된 관청이나 개인 또는 법인: 자유베를린방송, RIAS 방송, 북독일방송, 서부독일방송, 짜-르란트방송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관청(Stelle): ZDF, 독일방송, DW 등은 직접적인 관련자나 법인 또는 관청(Stell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13) 바이에른방송법.
- 14) 북부독일방송, 서부독일방송, 남부독일방송, 남서부방송, 자유베를린방송, RIAS.
- 15) 라디오 브레멘, 헤센방송.
- 16) ZDF, DW, 독일방송.
- 17) Bewall, "Probleme", 105 쪽, Köbl, Entgegenungsrecht, 37 쪽.
- 18)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출판법들.
- 19) Löffler, Handbuch. § 11 문단번호 194; OLG Köln U. 23.11.71, AfP 72, 231; OLG Frankfurt U. 21.6.85, AfP 85, 288.
- 20) H. Bethge, Die Passivlegitimation für Gegendarstellungsbegehren im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이하 Die Passivlegitimation 이라 함). Mainz, 1987, 60 쪽.
- 21) OLG Hamburg U. 18.12.80, AfP 81, 299; OLG Frankfurt U. 21.6.85, AfP 85, 288.
- 22) BVerfG B. 8.2.83, AfP 83, 334.
- 23) Dewall, "Probleme", 103 쪽
- 24) Groß, Presserecht, 158 쪽.
- 25) Seitz /schru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82.
- 26) 바이에른방송법(B RfR)은 'gleicher Sendezeit'라고 표현하고 있고, 서부독일방송법(WDR RfR)은'gleicher Tageszeit'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 27) OLG Hamburg B. 24.8.72, AfP 73, 388~389.
- 28) Löffl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97
- 29) Dewall, "Probleme", 103 쪽.
- 30) Sel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384.
- 31) OLG MÜNchen B. 12.6.89; LG Frankfurt B. 21.5.07, AP 87, 723.
- 32) ARD 기본협정 제 4 의 9 LG Oldenburg. 25.11.aS, AfP 86, 84.
- 33) 독일의 이러한 규정과 법원의 일관성있고 단호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많이 대비되는 바,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언론이 반론청구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인터뷰나 취재기사를 통한 보도를 약속하고 반론문을 실어주지 아니하는 예가 허다하다. 이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가 반론권자들도 반론문의 게재보다는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선전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반론권의 기본취지와 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 34) 활동사진(Film)이나, 정지사진(Photo), 만화, 스케치(Zeichnung) 등 유발주면에 대응되는 화면이면 모두 인정되나, 고지방송이 담담하여야 하듯이 대응필름도 반론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Dewall, "Probleme", 101 쪽.
- 35) Dewall, "Probleme", 103 쪽.
- 36)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58.
- 37) 사진을 영상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송설비(Sendeapparat)의 사용도 물론 무료이다.
- 38) Dewall, "Probleme", 104 쪽.
- 39) Dewall, Gegendarstellungsansrecht. 53 쪽.
- 40)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53 쪽 ; Dewall, "Probleme", 1 鈍 쪽.
- 41)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438~443.
- 42)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소송에 관한 소송절차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함부르크 매체법 제 13 조 제 5 항, 니더작센주 방송법 제 18 조 제 4 항, 짜-르란트주 방송법 제 7 조 제 4 항,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 방송법 제 19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 ※주상전송에 관한 주간협정 제 7 조 제 3 항, 남부독일방송법 제 55 조 제 4 항, 브레멘 매체법 제 19 조 제 4 항, 서부독일방송법 제 9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본안소송배제
- ※라인란트-베스트팔렌주 방송법 제 16 조 제 5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민소법 제 926 조 배제
- ※ARD 지침, ZDF 에 관한 주간협정, 남서부독일방송에관한 주문협정 제 7 조 : 규정 없음.
- 43) BVerfGE 12, 205.
- 44) 1967 년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짜-르란트주 의회에서 주방송법을 개정하여, 민영라디오방송(Freier Rundfunk AG, FRAG)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당국은 방송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FRAG 측은 소송을 제기하여 동사건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짜-르란트주의 민영방송에 관한 개정언론법이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BVerfGE 57, 295, 332 ; 일명 제 3 차 텔레비전 판결). 동판결 이후 독일에서는 CATV, 위성방송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민영방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45) Christopher Wlteman, "West German Television Law : An Argument for Media as Instrument of Self-Government"(이하 "West German I"이라 함), 7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 REV. 154(1983).

46) 용어가 표현상 다를 뿐, 내용은 '동일 시간대', '동일프로그램', '동일 방송영역'과 같은 내용이다. Dewart, Gegendarstellungsanspruch . 142 쪽.

47) 함부르크매체법 제 2 조 제 6 항.

48) 박용상, "일반적 고찰", 55 쪽.

49) Danziger, "The Right of Reply", 179 쪽

참고문헌

Bamberger, Heinz Georg, Einführung in das Medienrecht,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6.

Benda /Maihofer/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Berlin : Walter de Gruyter, 1984.

Bernhardt, Rudolf, et al., Völkerrecht für HermannMosler Berlin : Springer Verlag, 1983.

Bethge, Hans, Die Rassivlegitimation für Gegendarstellungsbegehr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Mainz, 1987.

Bleckman, Albert, Sraatsrecht II –Die Grundrechte Köln: Carl Heymanns Verlag, 1989.

Delp, L./Lutz, p., Sammlung Delp–Rdpubl, Das Gesamte Recgt der Publizistik,
München:Rehm–Druck
1986.

Dewart, Hans von. ,Gegendarstellungsrecht und Right of Reply: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Hörhunk und Fernseh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SA,
Berlin:Schweitzer, 1973.

Doehring, Karl,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Alfred
Metzner
Verlag, 1984.

Dolzer, Rudolf (hrsg.),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s. Heidelberg : Müller, 1982.

Groß, RolF, Presserecht, Wiesbaden :Deutscher Fachschriten, 1982.

Harbermas, Jürgen,struklurwandel der öffentlichkeit, Luchterhand, 5. Aufl., 1971.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4
Aufl.,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84.

Köbl, Hans, Das presserechtliche Entgegenungsrecht und seine Verallgemeinerung., Berlin: Diss. Erlangen, 1966.

Leibholz, Gerhard/Rinck, Hans-Justu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6 Aufl., Köln: Verlag Dr. Otto Schmidt KG, 1987.

Löffler, Martin, Handbuch des presserechts, München: C. H. Beck. 1978.

Löffler/Golsong /Frank, Le Droit de Reponse in Europe=Das Gegendarstellungsrecht in Europe: Möglichkeiten und Harmonisierung, München C. H. Beck, 1974.

Löffler/Wenzel/Sedelmeier, Presserecht Kommentar München: C.H.Beck. 1983.

Maunz/Dürig/Herzog/Scholz/Lerche/Papier/Randelzhofer/Schmidt – Aßmann, Grundgesetz Kommentar. 6. Aufl., 4 Bände(Loseblatt), München: C.H. Beck, 1989.

Rehbinder, Manfred, schweizerisches Presserecht. Bern, 1975.

Reumann, Kurt, Waffengleichheit in der Gegendarstellung. Berlin:Dunker & Humboldt. 1971.

Schwabe, Jürgen (Hrsg),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4. Auflage, Hamburg : Verlag de Gruyter, 1988.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2. Auflage München:Verlage C.H.Beck. 1990.

Sielmann, Wolfram, Kampf um Meinungsfreiheit im deutschen Konstitutionalismus. Strassburg:N. P. Engel Verlag. 1986.

Stammier, Dieter, Die Presse als soziale und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 C.H.Beck, München, 1971.

Stein, Ekkehart, staatsrecht. 9th ed.,Tübingen:J.C.B.Mohr. 1984

Tettinger, Peter J., Neue Medien und Verfassungsrecht. München:C.H.Beck., 1980.

Wenzel, Karl Egbert,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Köln: Dr. Otto Schmidt KG, 1986.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Legal Section, Das Gegendarstellungsrecht in Europe = The Right of Reply in Europe=Le Droit de Reponse in Europe: Möglichkeiten der Harmonisierung. München:C. H. Beck, 1974.

Mitglie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Tübingen:J.C.B.Mohr(Paul Siebeck), 1992.

Arndt, Helmut, "Theoretische Einführung in die Pressekonzentration", in : Prokop, Hrsg. Massenkommunikationsforschung1, Fischer, 1972.

Bockenforde, Ernst-Wolfgang.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Zur Gegenwärtigen Lage Grundrechtsdogmatik", 29 Der Staat 1(1991. 1.).

Bockenforde/Grawert. „Zur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urch andere Grundrechte“, DoV 1966. Bullinger, Mart Und Zivilrechtsprechung", In Festschrift für Nawiasky, 1956.

Grob, Rolf, "Zum Gegendarstellungsanspruch", DVB 1, 1981.

Hertin, Paul W., "Die Gegendarstellung im Rundfunk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orstellungender EG-Kommission", 85 ZUM 409 (1985).

Hesse, Albrecht, "Gegendaestellung in Press und Rundfunk ", ZUM, 1985.

Hoffmann Riem, Wolfgang, "Massenmedien", in Benda, E. /Maihofer, W. /vogel, H J .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84.

Löffler, Martin, "Das Internationale Gegendarstellungsrecht", NJW 72, 2161 (1972).

Puttfarcken, Carsten, "Die Gegendarstellung im Rundfunk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orstellungender EG-Kommission ", 85 ZUM 409 (1985)

Rehbinder, Manfred, "Die Neuordnung des Gegendarstellungsrechts in der Schweiz", 85 ZUM 416(1985).

Romatka, Georg, "Gegendarstellung in Press und Rundfunk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orstellungender EG-Kommission", 85 ZYM 400 (1985)

Schmidt-Glaeser, Walter,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Verf" AoR 72, 97 (1972) Starck, Christian, "Meinungs- und Wissenschaftsfreiheit", In Festschrift für Wolfgang Zeidler. Berlin: Walter de Gruyter, 1987.

Wenzel, Karl Egbert, "Nochmals: Grenzen des Gegendarstellungsanspruches". AFP, 1971

□ 이화여대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법학박사),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

□ 저서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소고」, 「종합유선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외

□ 현재 이화여대, 건국대 강사